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 포함〉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4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 포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 포함

개정안은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2. (생 략)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 ----- ----- 1.·2. (현행과 같음)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u>지역 역점시책</u>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 ----- ----- <u>지역 역점시책,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u> ----- ----- -----

현행	개정안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현행의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은 크게 ①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특별교부세 재원의 4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특별교부세 재원의 50%),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지역 역점사업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특별교부세 재원의 10%) 등으로 구분됨.

개정안은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¹⁾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앞서 언급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중 ③의 유형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아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확대에 소극적인 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설치·확대를 적극적으로 추

1)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20.7%(2025년 11월 1일 기준, 국가데이터처)

- UN기준: 65세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은 현행법상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① 지역현안, ② 재난 및 안전관리, ③ 국가적 장려사업·국가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지역 역점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 유형을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임.

또한, 이미 「지방세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8]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중 체육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8]]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마.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u>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u>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8]에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이미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을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낮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